

## 특집 01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환경 변화 대응 전략



### 목 차

1. 서 론
2.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동향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
4. 결 론

윤 수 영  
(한국인터넷진흥원)

## 1. 서 론

급속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함께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활발하다. 민간 분야에서 수집·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비대면 상태에서의 이용자 식별 및 고객 관리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며, 이는 공공 분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대량 집적·이용에 따른 보호조치는 충분하지 못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따른 사건 사고 또한 끊임없이 발생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에는 외부 해킹으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정보 1,081만건이 유출되었으며, 2009년에는 전체 성인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1,100만건의 정유사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

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공공·민간 전체를 아우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및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제도 등 각종 신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규제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2010년 1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옥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법률상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 미이행이 단순 준법 의무 미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상에 있어 치명적인 위험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역대 최대인 14만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한 이번 소송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도난 사건 발생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해킹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해킹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주요 요건 중 하나로써 관련 법령이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제시하였다.<sup>1)</sup> 옥선은 법률상 규

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 및 기타 개인정보를 위한 보안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어,<sup>2)</sup>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되었으나, 이는 역으로 법률상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재판에서 기업이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정책 변화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게는 필수적인 위험 관리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동 원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법 시행에 따른 신규 제도 도입 등 규제 환경 변화에 있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대응 방향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 2.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동향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공공 및 민간으로 구분되어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로 규율하고 있으며 민간 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25개 업종<sup>3)</sup>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가장 광범위하고 상세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 금융분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 등 업종별 개별법을 통해 일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별법 체계에서는 분야별로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비영리 기구, 동호회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취급 행위를 규제할 수 없어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09년 발생한 정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정보통신망

법이 정유사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취약성이 정보통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일반법으로써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요구가 더욱 활발히 제기되었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각각 8월 및 10월에 개인정보보호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였으며 행안부가 발의한 정부입법안이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 현재 3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동 3개 법안은 조항별 세부 내용은 일부 상이하나, 법률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며 OECD 8원칙 등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문화한다는 동일한 입법 취지에서 출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규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규 제도 및 의무사항 대해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3개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을 공공·민간 부문을 망라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비

- 1) 2009가합88186, 그 외의 요소로는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정도,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해커가 사용한 해킹 기술의 수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
- 2) 2009가합88186, "피고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고시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한 사실은 앞서, 4. 바. 1)하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학원, 교습소, 할인점, 백화점, 쇼펜센터, 체인사업, 항공업,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영리단체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그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Life Cycle(수집-이용-제공-파기) 단계별 보호 기준 규정을 명시하고 그 조치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감독, 민원의 처리 등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였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법령이 있거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현행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CCTV에서 공공·민간에서 설치하는 CCTV,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확대하였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화하고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보유 등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원고에서는 현행 공공기관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Life-Cycle에 따른 보호 조치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외에, 규제 환경에 많은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도입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세부 법률 조항에 있어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

#### 3.1 개인정보 적용 범위의 확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의 대상을 현행 개별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 특정짓

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등을 말하며<sup>4)</sup>, 기관이나 업종의 성격과 무관하게, 동호회,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 개인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모든 법인 및 자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민간 부문에 있어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법률상 보호대상으로 제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개인의 정보는 법률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정보주체<sup>5)</sup>’의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나 잠재 고객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 외에도 임직원의 개인정보나 제휴사·위탁 업체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시에 동의를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 시행 이후에는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해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수집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 해당 지원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집한 임직원의 개인정보는 인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해

4) 개인정보 보호법(정부발의) 제2조제5호

5) 개인정보 보호법(정부발의) 제2조제5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 “정보주체란”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오·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보유기간이 도래한 후에는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물론, 근로자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은 없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시에는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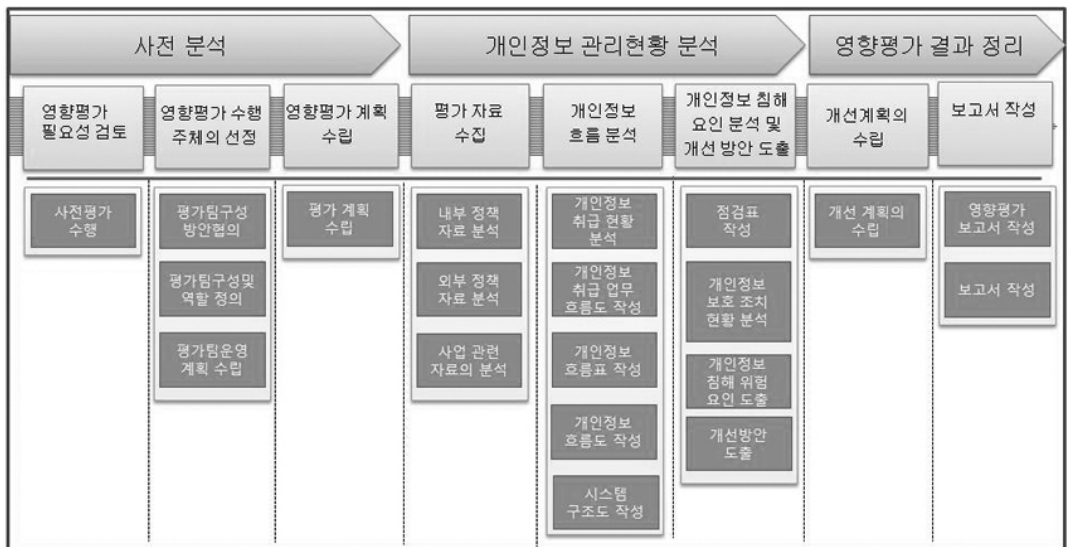
### 3.2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는 신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구축 등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거나 기존 개인정보 취급 절차등을 변경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주요 평가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법규, 정책, 지침 등에 대한 준수 여부, 개인정보 수집·저장·이용/제공·파기 등 각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여부 등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의 특성상 한번 유출될 경우 계속하여 불법 거래되고 제2, 3의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하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조치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침해 위험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시행 착오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사후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에 비해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위험관리차원에서도 효율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는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규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



(그림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자율 수행을 권고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법시행시에 공공기관은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 취급 사업 추진시에는 의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업의 유·무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관리차원에서 사전 영향평가 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

### 3.3 주민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의 수집 제한 및 암호화

주민번호는 최초 행정 사무 편의의 목적으로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발급되었으나, 공공·민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 식별의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는 실명 확인, 성인인증 등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하여 주민번호 유·노출 및 명의도용에 의한 사고가 심각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2008년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민원 사례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를 훼손·침해·도용한 경우가 전체의 25.5%인 총 10,148건이 접수된 바 있다.

주민번호는 번호 그 자체에 이미 성별, 생년월일, 출신 지역 등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한번 노출시 변경·갱신이 어렵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여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들이 수집한 주민번호를 고객 관리, 제휴 마케팅 등을 위해 폭넓게 활용하고 있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주민번호의 유·노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6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를 활용한 실명 인증 절차외에도 회원가

입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여 주민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고자 하였으며, 2009년 8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를 비롯한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저장의 의무화 하였다. 행정안전부 또한, 2008년 7월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및 주민번호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와 같이 국민 개개인에 고유하게 부여되는 고유식별정보<sup>7)</sup>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집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등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함으로써, 주민번호의 광범위한 사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주요 식별자료써 주민번호를 활용하여 온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법적 근거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별도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수집하되, 수집한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 3.4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제도 도입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 제도는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6) 개인정보 보호법안(정부발의) 제31조

7) 주민번호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해당될 수 있다.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및 정보주체의 효과적 권리 구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본<sup>8)</sup>, 뉴질랜드, 미국 등 국외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정부차원에서 유출 통지 제도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 발생시 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sup>9)</sup>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접근 로그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상시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즉시 정보 주체 및 관계 부처에 알릴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3.5 CCTV 통제 강화

CCTV는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널리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 정보가 수집되고 보관되므로 무단 공개 및 유출등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특히,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 단순 모니터링에서 개인식별, 실시간 추적등이 가능하여 프라이버시침해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다. 그간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정하였으나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근거 법률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러한 CCTV의 설치 운영을 공공 및 민간을 망라하여 제한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정부안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CCTV 설치·운영시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녹음기능 또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방법 등의 목적으로 건물 외곽 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기업이나 종교단체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임의 조작 및 녹음 기능 제한 등을 위한 CCTV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4. 결론

앞서 살펴본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환경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의무 부과를 공공 기관 및 일부 업종의 기업 등에게 제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법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수집·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일련의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른 단계별 보

8)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22조에서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외에 총무성에 즉시 유출 사실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9) 개인정보 보호법안(정부발의) 제32조

호조치 위주로 규정하여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전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사후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제도의 도입 등 조직적 관점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은 개별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는 일반 정보보안과는 달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수집한 목적에 부합하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조직내에 다양한 부서가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보 보안 부서 등 개별 부서에서 제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의 특성을 반영하고, 정보화 사회의 고도화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라는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적 관점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전사적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보호조치 구현에 대한 기준인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국제표준 기구인 영국표준협회(BSI)는 영국 정보보호법(Privacy Act)를 기반으로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수집·운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 경영시스템 관련 표준인 BS 10012를 2009년 5월 개발하였으며 BSI 코리아가 이를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여부는 그 시기가 불분명하나,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요구에 부응하여 법률 제정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조직적 관점에서의 관리 체계는 단기간에 구축하기가 어렵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

생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뢰도 등과 직결하므로 법 제정 시점과는 무관하게 조직적 측면에서의 개인정보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조직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갈수록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환경 변화에서의 효율적 추진 전략일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개인정보 보호법안, 정부 발의, 국회 제278회기, 의안번호 1802369, 2008
- [2] 개인정보보호법안, 변재일의원 등 13일 발의, 국회 제278회기 의안번호 1801598, 2008
- [3] 개인정보보호법안, 이혜훈 의원 등 15인 발의, 국회 제278회기 의안번호 1802369, 2008
- [4] KISA,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가이드, pp. 8, 2010
- [5] KISA,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 pp. 6, 2006
- [6] 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2009 국가정보보호백서, pp. 105, 2009
- [7] KISA, 제2회 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워크숍, 2009

## 저자약력



**윤수영**

2000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학사)

2000년~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개인정보보호단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정책 연구

이 메 일 : [sue@kisa.or.kr](mailto:sue@kisa.or.kr)